보도자료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가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24. 3. 28.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_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국적자로서, 2018. 3. 21. 난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16.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 청구인은 2020. 5. 13.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20. 6. 18. 서울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직원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난민 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1. 주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안)', 예비적으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처리기준]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2 가구구성 세부기준
- (재외국민·외국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 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가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 지급대상 포함
- * (예)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특례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 중인 경우

[관련조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 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 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된 것)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___ 결정주문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_ 이유의 요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 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그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1994년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1,38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바,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 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것이다.